# 면목유수지 문화체육복합센터 건립 관련 공영주차장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

의 안 번 호 691

제출년월일: 2023년 3월 29일 제 출 자:서울특별시장

## 1. 제안이유

- 가. 중랑구의 면목유수지 문화체육복합센터에 따라, 市공영주차장 부대시설 1층 상부 증축(영구시설물 축조)으로,
- 나.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」제9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

#### 2. 주요내용

가. 대상지 현황

○ 주차장명 : 면목유수지 공영주차장

○ 위치/면적 : 서울시 중랑구 면목동 168-2(59,665 m²)

○ 소 유 권 : 유수지(중랑구), 공영주차장·부대시설(서울시)

○ 위치도 및 현황사진



#### 나. 문화체육복합센터 건립 개요

○ 사업목적 : 중랑구민의 문화체육복합센터 수요충족 및 편의증진

○ 사업기간 : 2019년 ~ 2026년

○ 사업규모 : 연면적 8,936m² 증축(홈플러스 상부 2, 3층)

※ 기존 부대시설 면적 : 10,461 ㎡(홈플러스, 관리동, 기계·전기·물탱크·감시실)

항목	<b>층수</b>	면적(m²)	세부시설용도	비고
	계	18,812.17		
증축	지상3층	769.00	다목적체육관(관람석), 기계실	증축 후 중랑구 소유
	지상2층	8,167.00	다목적체육관, 사회복지시설, 공공도서관, 청소년 문화의 집	
기존	지상1층	9,876.17	주차장 부대시설(판매시설)	서울시 소유

○ 사업예산 : 36,537백만원(국비 3,283, 시비 11,145, 구비 22,109)

- (시비지원부서)체육진흥과(6,061), 서울도서관(2,110), 청소년정책과(2,974)

## 다. 사전절차

○ 서울시 제1차 공유재산심의회('23.3.16.) 심의 결과 : "적정"

## 라. 기대효과

○ 문화인프라가 부족한 중랑구에 문화체육복합센터를 건립하여 주민 편의 증진

#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○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」제9조 제1항

제9조(영구시설물의 축조 금지) ① 법 제13조 단서에 따라 공유재산에 영구 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.

11.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아닌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5조제2항 제1호에 따른 공용재산(이하 "공용재산"이라 한다)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공공용재산 (이하 "공공용재산"이라 한다)에 해당하는 <u>영구시설물을 축조하는 경우로서 지방</u> 자치단체장 간에 서로 합의하고 해당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

○ 「市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」제4조의2

제4조의2(공유재산심의회의 기능) ①심의회는 법 제1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마. 영 제9조제1항제11호에 따른 영구시설물 축조

- 서울시 제1차 공유재산심의회('23.3.16.) 심의 결과 : "적정"

나. 예산조치 : 해당없음

다. 합 의: 해당없음

※ 작성자 : 도시교통실 주차계획과 임재연 (☎2133-2374)